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모바일신분증 발급 근거 등 마련〉

■ 조승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332호)

2025.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조승환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4. 11. 7.
3. 회부연월일 : 2024. 11. 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이하여 국민의 디지털 환경에 대한 적응력과 이해도가 높아짐에 따라 행정서비스 제공 시 필요한 정보의 확인 방식이나 서비스 제공 방식 등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음.

이에 따라 기존의 신분증도 국민이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신분증의 형태로도 발급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으나, 관련 법 체계가 미흡하여 보완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 법률안은 개별법에 따라 추진 중인 모바일신분증을 체계적으로 발급·관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모바일신분증의 안전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디지털 전환 시대에 국민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전자정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안 제10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모바일신분증의 발급, 운영 및 활용 등과 관련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u><신 설></u> ※관련 조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생략) 4. “<u>이동통신단말장치</u>”란 이용자가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4의2. (생략) 5. (생략) 5의2. (생략) 6.~11. (생략)	<u>제10조의2(모바일신분증의 발급 등)</u>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분증에 대하여 해당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모바일신분증(「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신분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발급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모바일신분증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모바일신분증의 발급·이용·폐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모바일신분증의 발급·이용·폐기 등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운영기반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모바일신분증의

	<u>발급·이용·폐기, 안전성 확보조치 및 운영기반 구축·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	---

행정안전부가 추진하고 있는 ‘모바일신분증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사업’은 온·오프라인에서 신원 확인 목적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모바일신분증의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1년 1월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을 시작으로, 2022년 7월 모바일 운전면허증, 2023년 8월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2024년 12월 모바일 주민등록증, 2025년 1월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이 시작되었고, 향후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등으로 확대 예정으로 파악됨.

[모바일신분증 도입 및 도입예정 현황]

구분	도입 시기	주관 부처	법적 근거
모바일 공무원증	2021년 1월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모바일 운전면허증	2022년 7월	경찰청	「도로교통법」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2023년 8월	국가보훈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등
모바일 주민등록증	2024년 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법」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2025년 1월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모바일 재외국민신원확인증	2024년 6월	재외동포청	개정 추진
모바일 국가기술자격증	2025년 1월	산업통상자원부	개정 추진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2026년 1월)	보건복지부	개정 추진

자료: 행정안전부

현재 발급되는 모바일신분증은 각각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1) 「도로교통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²⁾, 「국가보훈 기본법」 및 국가보훈관계 법령³⁾, 「주민등록법」 4), 「출입국관리법」 5)에 그 법적 근거를

1)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62조의2(모바일 공무원증의 발급권자 등) ① 발급권자는 공무원증을 발급받은 공무원(발급 신청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③ (생략)

2) 「도로교통법」 제85조(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① (생략)
②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⑤ (생략)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7조(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① (생략)

② 법 제85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별지 제55호서식의 운전면허증
2. 별지 제55호의2서식의 영문운전면허증(운전면허증의 뒤쪽에 영문으로 운전면허증의 내용을 표기한 운전면허증을 말하고, 이하 “영문운전면허증”이라 한다)
3. 별지 제55호의3서식의 모바일운전면허증(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운전면허증을 말하고, 이하 “모바일운전면허증”이라 한다)
③~⑤ (생략)

3) 「국가보훈 기본법」 제21조의2(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등록증 발급)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되었음을 증명하는 등록증을 발급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국가보훈등록증(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발급한다. (후단 생략)
1. · 2. (생략)
②~⑤ (생략)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등록된 보훈보상대상자나 선순위 유족에게 국가보훈등록증(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발급한다. (후단 생략)
②~⑤ (생략)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6조제4항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에게 국가보훈등록증(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발급한다. 이 경우 선순위 유족이 5·18민주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 유족이 아닌 모 또는 부에게도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한다.
②~⑤ (생략)

4) 「주민등록법」 제24조의2(모바일 주민등록증)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4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주민등록증과 효력이 동일한 모바일 주민등록증(「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주민등록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기재사항 및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②·③ (생략)

5) 「출입국관리법」 제33조(외국인등록증의 발급 등) ①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받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외국인에게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외국인이 17세 미만인 경우에는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⑤ (생략)

⑥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에게 외국인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외국인등록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발급할 수 있다.

두고 있고, 모바일 재외국민신원확인증 및 모바일 국가기술자격증은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는 한편, 모바일 장애인등록증(2026년 1월 도입예정)은 법적 근거를 마련 중인 것으로 파악됨.

이처럼 개별 모바일신분증의 발급 근거는 해당 신분증과 관련된 개별 법령을 통해 마련되고 있으나, 개정안은 “모바일신분증”이라는 용어를 도입하여 모바일신분증 발급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모바일자신분증이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그 효력이 부인되지 않음과 행정기관등⁶⁾의 장이 모바일신분증의 발급·이용·폐기에 관한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조치의무를 해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의 모바일신분증 발급·관리와 관련한 공통 운영기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모바일신분증 제도운영의 체계화 및 종합화를 도모하려는 취지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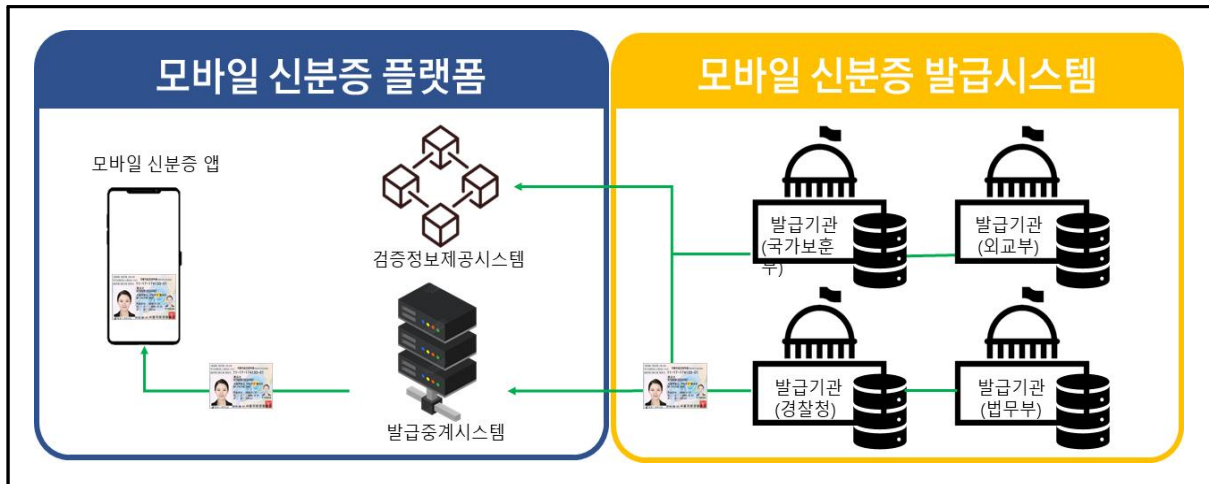
⑦·⑧ (생략)

6) 「전자정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정부”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업무를 전자화하여 행정기관등의 상호 간의 행정업무 및 국민에 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정부를 말한다.
2. “행정기관”이란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
 -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 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4.~15. (생략)

【모바일 신분증 시스템 구조】



자료: 행정안전부

다만,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다음 사항에 대해 논의가 필요해 보임.

첫째, 모바일신분증의 위·변조 및 부정 사용 등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제재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최근에 모바일신분증⁷⁾ 및 모바일확인서비스⁸⁾의 부정 사용이 증가하는 가운데 18세 미만 미성년자에 의한 행위가 차지하는 비율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는 등 모바일신분증 부정 사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바, 향후 모바일신분증의 위·변조 및 부정 사용을 예방·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됨.

7) "수능 끝났다... 수능 후 '위조 신분증'에 비상 걸린 자영업자", YTN, 2024.11.14.,
 "위조 신분증 2만원, 선착순 10명만...일탈 마려운 고3, 술집에 판친다", 매일경제, 2024.12.3.,
 "3만 원에 만들어줍니다... '위조 모바일 신분증' 불법 광고 기승". SBS 뉴스, 연합뉴스, 2025.1.6.
 "모바일 신분증 도입하는데 '위조 신분증'도 기승...불법광고 즐비", 경기신문, 2025.1.5.,
 "5000원이면 제작"... '위조 모바일 신분증' 불법 광고 기승", 경북일보, 2025.1.7. 등 다수 언론보도 참조

8)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신분증의 일부정보(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를 확인하는 서비스임.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부정사용과 관련 수사 의뢰는 2023년 161건 → 2024년 186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모바일신분증을 위·변조 제작하거나 모바일신분증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의 종류 및 최고한도를 규정하여 법적 이행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주민등록법」 9), 「도로교통법」 10), 「출입국관리법」 11) 등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등의 부정 사용 행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형벌의 범위와 수준에서는 개별법률마다 차이가 존재함.

[모바일신분증 부정사용, 위·변조 및 그 행사 처벌 규정]

구분	부정사용	위·변조	위변조행사	형량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법 제37조	X	X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운전면허증	도로교통법 제150조	X	X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외국인등록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X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국가보훈증	X	X	X	X

9)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7. 및 7의2. (생략)
8.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등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 8의2.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등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 9 · 10. (생략)

10) 「도로교통법」 제1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및 3의2. (생략)
- 3의3. 제92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명의의 모바일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
4. ~ 6.(생략)

11) 「출입국관리법」 제9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18. (생략)
19. 33조의3을 위반한 사람
20. (생략)

둘째, 모바일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는 행정기관등에는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이하 “헌법기관”이라 함)이 포함¹²⁾되므로 안 제1항 및 제3항의 조문에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안 제10조의2제1항에서는 발급할 수 있는 모바일신분증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모바일신분증 공통 운영기반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 체계에 맞추어 헌법기관에 대해서는 각 기관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겠음.

문 의 처

02)6788-5339

12) 「전자정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정부”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업무를 전자화하여 행정기관등의 상호 간의 행정업무 및 국민에 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정부를 말한다.
2. “행정기관”이란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
 -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 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4.~15. (생략)